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51 발의연월일: 2020. 11. 27.

발 의 자: 강은미・류호정・민병덕

민형배 • 박대수 • 배진교

심상정 · 안호영 · 이동주

이용빈 · 이은주 · 장혜영

조오섭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생·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, 중대 연구실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.

실제로 2019.12.27. 경북대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등이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으나 그 피해를 보상하 기에 민간보험의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, 연구 도중 발생하는 사 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을 개정하는 한편,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

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 48조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85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3(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) ①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(이 하 "연구활동종사자"라 한다)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 성격, 연구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, 산재보험료율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|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3(연구활동종사자에 대 <신 설> 한 특례) ① 「산업재해보상보 험법」 제123조의2제2항에 따 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 구활동종사자(이하 "연구활동 종사자"라 한다)에 대한 산재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 수액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 성격, 연구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으로 하고, 산재보험료율은 연 구활동종사자의 재해율 및 재 해보상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고 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.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